

SAG.d.9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1998. 9. 25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1998. 9. 25

민 주 주 의 법 학 연 구 회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제1주제 인권법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립: 의미, 성격, 과정, 내용
곽노현(방송대, 사회경제법)

제2주제 국가인권기구의 생점과 대안
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행정법)

제3주제 인권법의 제정방향
정태욱(영남대, 기초법)

사회 강경선(방송대, 기초법)
지정토론 차지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종서(배재대, 헌법)

일시: 1998년 9월 25일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별관2층 교수세미나실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국가인권기구 공추위

후원: 한국방송대학교 방송국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 의미, 성격, 과정, 내용

곽노현(방송대, 사회경제법)

인권법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정한 인권의 국내적 실효성을 높일 목적으로 인권 전담 국가기구의 설치, 기타 필요한 인권보장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을 일컫는 용어다. 이러한 의미의 인권법은 역사가 매우 짧다. 세계적 흐름으로 일컬어지는 뉴질랜드의 인권법이 제정된 것이 1977년이었으나 이제 간신히 20년을 넘어선 정도다. 뉴질랜드의 경우 인권법은 1976년의 국제인권규약 발효를 앞두고 국내적 실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안되어 제정에 이른 것이었다. 여기서는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역사적, 법적 의미와 바람직한 과정과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역사적 의미

현 정부의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 추진은 우리 국가의 성격과 면모를 인권존중국가로 바꿔놓고자 말겠다는 강력한 인권상황 개선의지의 표명이다. 이는 물론 그동안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우리 민주화운동의 성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무튼 인권법 제정과 인권기구 설립은 그동안 헌법왜곡과 인권유린으로 점철되어온 한국 현정사의 일대 분수령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금년은 민주적 정권교체를 맞이한 첫 해이자 헌법을 제정한 지 반세기가 되는 해이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목적이 인권보장에 있는 것이니만큼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기구를 설치하는데 금년만큼 좋은 해는 없는 듯하다. 또한 금년은 세계인권선언이 반포된 지 반세기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넘어서는 국제인권법상의 인권을 국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고 설치되는 것이 인권법과 인권기구 설치이니만큼 이 점에서도 금년은 안성맞춤인 해이다. 요컨대 인권법 제정과 인권기구 설치는 기본권과 인권을 실질화하고 민주주의를 전시키는 현정사의 일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체계적 위상과 성격

국가인권기구란 국제인권법시대가 현대의 민주국가에 요구하는 새로운 국가기구로서 현대적 민주헌정질서의 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임무는 한편으로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인권법,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인권법과 인권관련기구들의 중간에 서서 양자를 매개, 균접시키는데 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기관의 하나이면서도 여타 국가기구들을 국제사회와 보편성과 시민사회와의 공동체성에 의해 견제하고 견인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특이한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기구의 이러한 특징 및 인권의 토대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의 법체적 지위와 위상은 당연히 일반 법률이나 국가기구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어디서나 헌법사항이 되고 있으며 국가인권기구 역시 헌법기구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

헌법개정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법률의 형태로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기구를 설치

한다 해도 그 성격은 반드시 혹은 헌법적 법률과 준헌법기구로 이해해야 옳다. 인권법은 수다한 인권관련 법령을 두루 관철하는 기본원칙을 확인하는 인권법 총칙의 성격과 인권의 실질적 보장에 필요한 제반 원칙과 제도, 기구를 규정하는 종합적 인권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인권법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의 인권 전체를 실질적으로 보장, 집행하는 막중한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 혹은 헌법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법에 규정된 국가인권기구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기구 혹은 준헌법기구로 파악해야 옳다. 요컨대, 법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는 근대 헌법적 기본권 보장장치(삼권분립과 법치주의등)의 무기력과 한계에 대한 성찰을 전제로 기본권을 실질화하고 보편화하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개정이자 근대헌법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바람직한 입법과정

이상의 법체계적 관점을 따른다면 인권법 제정과 인권기구 설치는 헌법개정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 가운데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민간단체들의 주도와 정부의 후원으로 우리의 인권현실과 과제에 대한 사상 최대의 인식의식 캠페인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인권법이 제정되어야 옳다는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인권법안은 제정 예정 시점을 80일여 남긴 9월 25일에야 그 개요만이 간신히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법무부는 인권법인과 관련하여 관련 민간단체나 기타 전문가들의 공식 자문이나 협의를 전혀 거친 바 없다. 이러한 관주도식 일방통행 방식으로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한 나라가 있다는 말을 과문한 탓인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설령 있다고 해도 이런 나라의 국가인권기구가 제대로 기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관련 민간단체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국민적 환호 속에 창설되어도 여타 국가기관들의 견제와 반발로 말미암아 제대로 기능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국가인권기구다. 하물며, 구태의연한 관주도 방식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부쳐 관련 민간단체들의 외면과 냉소, 심지어는 의혹과 불신을 받는 가운데 탄생한다면 그 국가인권기구가 무슨 수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아무튼 지금까지의 관주도적 입법과정은 인권법과 인권기구의 법체계적 지위와 역사적 의미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남아있는 입법과정만큼은 형식적 입법과정을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다.

4. 바람직한 내용

인권법의 최소한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입법, 행정, 사법, 외교등의 영역으로 나눠서 보다 구체화하고, 둘째,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가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할 것을 명시하며, 셋째, 과거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상흔을 청산할 수 있는 일정한 원칙과 조치를 천명하며, 넷째, 차별없는 인권보장을 위해 금지되는 차별근거를 명문화하고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을 구체화하며, 다섯째, 이를 위해 인권보장을 전담할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국회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입법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든가 대외원조시 수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든가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금지대상 차별근거로는 일반적으로 국적, 인종, 피부색, 성, 신체 및 정신장애, 성적 취향, 혼인상태, 사상과 신조, 종교, 연령등이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출신과 학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법무부안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특수법인의 형태가 떨 것이라고 한다. 이는 위에서 밝힌 국가인권기구의 준헌법기구적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중대한 잘못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를 취한다지만, 공기업, 공단, 연구원등 비슷한 법적 위상을 갖고 있는 수다한 특수법인들의 경우 독립성과 자율성이 문제되지 않는 테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특히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법무부안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현재의 고충처리위원회처럼 권고적 권한을 갖는데 그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국가인권기구가 이렇듯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경우 수사와 행형에서의 인권보장이라는 누구나가 공감하는 인권과제를 처리하는데 크게 역부족이 될 것이 틀림없다.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할 경우 정치적, 정책적 이해관계나 인식차가 크지 않은 통상적 사안에서는 여타 국가기관들이 권고를 수락하겠지만 정치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크고 민감한 사안의 경우 경찰, 검찰, 안기부등 권력기관들이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후하다. 이렇게 되면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냉소가 사회 일반에 퍼지게 될 것이고 또다른 국가기구의 하나로 타락하게 된다. 인권의 실효성 보장 관점에서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소비자보호원류의 위상에 고충처리위원회류의 권한을 갖게 한다는 법무부의 기본 구상은 국가인권기구의 법적 성격과 위상에 대한 이해 부족 뿐 아니라 한국의 인권현실과 인권과제에 대한 안일한 사고의 산물로서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인권기구는 크게 선진국형과 후진국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선진국형은 차별금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기구가 설치되는 80년대쯤이면 이들 나라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전통이 이미 확립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체 인권기구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권후진국들의 경우 헌법기관인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전반적 민주주의와 법치 수준과 경제수준, 국민의식등에서 우리보다 훨씬 뒤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나마 자력으로 성취한 끝에 인권법과 인권기구를 만드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듯하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권법과 인권기구는 세계적 모범으로서 후발 국가들의 모델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게는 꿈이 있다. 민주적 참여와 공개적 토론을 통해 범국민적 단일법안을 마련하는 꿈, 그 인권법안이 정권교체 1주년과 인권선언 50주년을 맞는 오는 12월 중에 국민적 축제 분위기 속에서 국회를 통과하는 꿈, 인권법 제정을 기념하여 수배자 해제, 양심수 석방등 과감하고 대대적인 국민화해조치가 단행되는 꿈, 그리하여 인권과 평화의 새 시대를 성큼 앞당기는 행복한 꿈이 그것이다.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꿈과 충정을 공유하는 가운데 공추위를 결성하여 앞으로의 선한 짜음을 대비하고 있다.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

- 국제법, 행정법의 관점에서 본 국민인권위원회의 문제점 -

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하대강사)

I. 국제인권법과 한국에서 국가인권기구 논의 필요성

1. 국제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적인 인권증진의 노력들이 유엔등 국제기구에 의해 노력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인권기구¹⁾의 설립 권고 역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라는 용어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각국내에 인권기구의 설립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를 발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²⁾

국제기구 이외에도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지에서는 지역인권기구(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가 설치되어 활동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권보장과 증진은 일차적으로 각 나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보장은 각국의 국내문제로서 국민적 과제인 것이다.³⁾

1) 본문에서 '국가인권기구'란 유엔의 각종 문서들에서 보이는 Human Rights Institutes를 번역한 것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관을 충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국가인권기구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데 국민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옴브즈만(Ombudsman), 전문인권기관(Specialized Institutions)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주로 국제법상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반면 국민인권위원회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제정될 예정인 인권법상의 국민인권기구(Human Rights Commission)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 1978년 9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제네바에서 국민인권기구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minar on National and Loc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Geneva, 1978) 이 회의 결과 국민인권기구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1978)이 마련되었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1년 10월 파리에서 국민인권기구의 효율성을 모색하는 국제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 회합은 국민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해 국민인권기구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은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The Vienna Declaration)에서도 재차 강조되었다. 즉 각국 정부들에 대하여 국민인권기구의 설립과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활동과 프로그램의 확대강화를 권고하였다. 또한 국민인권기구의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하고 국민인권기구간의 협력 및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국민인권기구들의 정기적 회합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1993년 12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열린 제2차 국가인권기구 워크샵에서는 국민인권기구의 강화방안으로 유엔기구에의 참여 보장 방안과 유엔의 설립기금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논의하고, 국가인권기구협력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를 통한 국가인권기구들간의 정보교류를 권고했다. Virendra Dayal, Recent activiti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relating to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1994, 7-12쪽

3) UN Centre for Human Rights, National institution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1993, 2쪽; 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effective national institutions, 1993, 4쪽; Brian Burkin, Composition, Definition, Jurisdiction and Powers of National Human Rights

국가인권기구란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하여 인권 보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권한을 갖는 국가기구를 일컫는 용어이다.⁴⁾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효성 제고를 존재 목적으로 하는 인권전담 국가기구이다.⁵⁾

본격적인 국가인권기구는 1977년에 설립된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를 효시로 친다.⁶⁾ 그후 호주와 캐나다가 뒤를 이었다. 80년대 중반 이래 국가인권기구는 아시아, 중남미, 동구권에서의 민주화 진전과 유엔인권기구들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범세계적인 현상이 된다.⁷⁾

2. 한국에서 국민인권위원회 논의와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문민정부에서 정부 주도의 국민인권기구 설치가 검토된 적이 있다.⁸⁾ 그러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국가인권기구 설치가 김대중정부의 100대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부터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방문 첫날 인권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도 국민인권위원회 설치 및 인권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인권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법무부의 박상천장관도 획기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는 기존의 인권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인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즉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연구와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인권조약, 인권입법, 인권정책에 대한 대정부 자문과 조언, 인권침해

Institutions,Australian Human Rights and Equal Rights Commission, 1993, 7쪽

- 4) 그런데 국가인권기구는 아직 정립단계에 있는 개념이다. 즉 유엔에서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던 초기에는 외관상 국내적 차원에서 인권보장과 증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존 기관들을 모두 포함해서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인권교육, 정부에 대한 인권문제 자문, 인권침해청원에 대한 조사와 구제와 같은 특정한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기관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입법·사법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과 구별되게 되었다.
- 5) 1992년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민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에서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구체적 개념 정의가 시도되었다. 즉 국가인권기구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인권분야에서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 활동내용은 국내 및 국제적 인권관련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나 권고 또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고발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조치 등의 법적 권리와 범위에 따라 윤곽이 그려진다. 독립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활동한다는 점, 그러나 정부와의 특정관계속에 활동의 법적 제한과 제정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법적 강제력있는 최종판단을 내릴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정부행정기관 및 비정부단체 그리고 사법기관과 구별된다.
- 6) 1976년부터 효력을 발생한 국제인권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뉴질랜드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것을 뉴질랜드 정부가 받아들였던 설치한 것이다.
- 7)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등이, 동구권에서는 러시아, 라트비아, 몰다비아, 에스토니아등이,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등이,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등이 각각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국가인권기구의 국가내 위상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남아공, 태국, 멕시코, 필리핀, 베네수엘라의 경우 헌법기관의 하나로 격상되어 있다.
- 8) 법무부는 1996년 가칭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법무부, 외무부, 노동부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를 1998년까지 서울과 주요 지방도시에 설치하고 국고보조를 받아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상담, 진정서 접수처리, 인권침해사례 조사, 인권규약 관련업무를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1996년도 정기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에 대한 고발접수와 조사처리, 경찰, 군대, 교도소, 감호소, 수용소, 복지시설등에 대한 불시방문 점검권, 인권관련소송에의 독립참가권 등. 이러한 권한은 기존에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다.⁹⁾

II. 국가인권기구 설치의 원칙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국가인권기구를 만드는 이유나 필요성은 명확하다. 그러나 각국의 실제를 보면 국가인권기구는 일관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원칙들을 먼저 검토하여 보자.¹⁰⁾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유엔의 가맹국가들이 이 현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자유를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후 50년 동안 유엔은 각 국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발전시켜 왔다. 이하에서는 위상과 역할에 관한 것을 구분하여 원칙들을 보기로 하자.

1. 위상에 관한 원칙들

(1) 1978년의 국민인권기구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지침

유엔인권위원회는 1978년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운영을 위한 지침을 입안하기 위해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역기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인권기구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1978)¹¹⁾을 마련하였다.¹²⁾ 이에 따르면, 국민인권기구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법정기관(autonomous, impartial, statutory body)으로 설립될 것(44문), 국민인권기구의 구성원은 그 구성에서 널리 사회 각 계각층을 반영할 것(45문)을 들고 있다.¹³⁾ 이것은 국민인권기구의 역할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9) 일상화된 법집행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가혹행위, 고문에 의한 인권유린행위, 규명되지 않은 술한 의문사 등도 국민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설립이 과거의 인권억압적 국가로부터 인권옹호국가로의 단절을 의미한다면, 국민인권위원회는 4.3사태, 인혁당사건, 삼청교육대, 의문사, 조작간첩 등 각종 과거청산과제를 떠안어야 할 것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서서 확실하게 과거청산작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권기구야말로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식의 국민인권위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10) 본 논문에서는 국민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한정하여 보기로 한다.

11) 이 지침의 번역은 다음을 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6·7월 합본호(통권 제21호), 27-29쪽

12) 이 지침은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총회(General Assembly)의 승인을 받았다. 총회는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회원국에게 그 기구의 설립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였고, 사무총장에 기존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Centre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1995, 4쪽 23문

13) 기타 임면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국민인권기구 임명의 경우 임기는 고정적이어야 하며, 임명된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해임되지 아니할 것(46문), 국민인권기구는 법에 정해진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충분한 조직을 갖출 것(47문), 국민인권기구는 조직적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국민이나 공공기관의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대비를 할 것(48문), 지역보조기관(regional advisory organ)을 둘 것(49문)등이다.

(2) 1992년 파리원칙과 1995년의 '유엔의 설립지침서'

1978년의 기준은 1991년 유엔인권센타에서 마련한 파리회의¹⁴⁾에서 보다 구체화되었고, 1992년 파리원칙¹⁵⁾이 나오게 되었다. 이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민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1995년의 '유엔의 설립지침서'¹⁶⁾는 이 파리원칙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것으로 상당한 시사를 주고 있다.

① 독립성의 개념

국민인권위원회의 조직위상에 대해서 파리원칙은 독립성이란 용어로 표현할 뿐 그 이상의 구체화는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유엔의 설립지침서'는 독립성의 개념을 보다 명백히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독립성은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국민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정부, 정당,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모든 단체 및 상황에서 독립적일 수 있는 것"¹⁷⁾을 말하고 있다. 물론 국민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독립성의 제한이 국민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¹⁸⁾

파리원칙과 '유엔의 설립지침서'를 통해 볼 때 독립성은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하나는 법적 자치 및 운영상의 자치를 통한 독립성, 둘째는 재정적 자치를 통한 독립성, 셋째는 임면과정상의 독립성, 넷째는 구성을 통한 독립성이다.

② 법적 자치 및 운영상의 자치를 통한 독립

먼저 법적 자치 및 운영상의 자치를 통한 독립으로 '유엔의 설립지침서'는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인권위원회가 대통령과 의회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는 위상을 권고한다.¹⁹⁾ 운영상의 자치로는 국민인권위원회가 어떠한 개인, 조직,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말한다.²⁰⁾

③ 재정적 독립

둘째로 파리원칙은 재정적 독립성을 강조하여 "국민인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물적 기반, 특히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²¹⁾ '유엔의 설립지침서' 역시 재정자치의 필요성

14) 1990년 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국가 및 지역기구들이 참가하는 워크샵(workshop)을 소집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 워크샵'이 1991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앞의 책, 4쪽

15) 이 파리워크샵의 결론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인권위원회결의(1992년), 총회 결의(1993년)로 승인되었다. 앞의 책, 4-5쪽; 이 파리원칙은 다음 책에 전문이 실려 있다. Centre for Human Rights, 앞의 책, 37-38쪽; 이 내용은 다음에 번역되어 있다.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의 책, 30-31쪽

16) 영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Centre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1995(이하 Centre for Human Rights, 1995로 표기한다)

17)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10쪽

18)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10쪽

19)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10-11쪽

20) 그리고 효과적인 국민인권위원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국가인권기구의 권고, 보고 또는 결정은 설립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심사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11쪽

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국민인권위원회는 그러한 통제를 행사하는 정부 부처 또는 기관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설립법에 국민인권위원회의 재원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할 것, 그리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자체 예산편성 및 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한다.²²⁾

④ 임면절차를 통한 독립

셋째로 임면절차를 통한 독립성으로 파리원칙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유엔의 설립지침서'는 국민인권위원회에 대한 법적·기술적·재정적 자치의 부여만으로 독립성은 불충분하고, 국민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행동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한 조치의 예를 들면, 임명방법²³⁾, 임명기준²⁴⁾, 재임기간, 구성원들의 연임여부²⁵⁾, 구성원들의 면직권자와 면직사유²⁶⁾, 특권과 면제²⁷⁾에 관한 것이다.

⑤ 인적 구성의 독립

넷째로 인적 구성의 독립성으로 인적 구성에 대해서 파리원칙은 다양성을 중시하고 있다.²⁸⁾ '유엔의 설립지침서' 역시 구성을 통한 독립성 확보를 중시하여, 다원주의적 다양성을 강조한다.²⁹⁾

2. 권한에 관한 원칙들

국민인권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원칙들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위상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국민인권위원회는 아무리 중요한 권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공정하게 행사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면 권한문제는 중요해진다. 권한은 국민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다. 대개의 경

21) 이는 국민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그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상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조직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2)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11쪽

23)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임명방법은 독립성의 보장차원에서 의회와 같은 대표기관에 위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표결 및 후속절차를 포함한 임명방법에 관한 문제를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11쪽

24) 임명기준에는 국가인권기구에의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국적, 직업, 자격 등)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11쪽

25) 재임기간에 관하여 국민인권위원회의 고위직은 보장되고 고정된 기간의 재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권고 한다. 현존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연임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11쪽

26) 면직사유는 중대한 불법행위 등으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며 면직권은 의회 또는 동등한 고위급에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11쪽

27) 국민인권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특권과 면제는 인권 침해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국민인권위원회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11쪽

28) "국민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 또는 선출은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 즉 특히 인권을 위해, 인종차별에 맞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 노동조합, 관련 사회 및 직능단체(변호사, 의사, 언론인, 과학자 협회), 사상 및 종교단체, 대학과 전문가들, 의회, 정부부처(만약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부대표는 자문자격으로만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들고 있다. 또한 구성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민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에 필수적인 권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권한위임의 지속을 확실케 할 공식적 법령에 의해 그 구성원들이 임명될 것 및 이러한 권한위임은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 생신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37쪽

29)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12쪽

우 국가인권기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① 인권에 관한 인식장려와 교육업무

첫번째로 인권에 관한 인식장려와 교육업무이다. 인권에 관한 인식의 장려(Promoting Awareness)란 인권에 관하여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 인권을 증진하는 가치와 태도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격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홍보와 교육이란 인권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³⁰⁾

② 정부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업무

둘째로 정부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업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의회, 행정부 및 사법부에 조언을 하고 이들 기관들의 인권장려와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권한을 갖는다.³¹⁾

③ 인권침해여부의 조사작업

셋째로 인권침해여부의 조사작업을 들 수 있다.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는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정부가 인권을 옹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³²⁾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인권기구는 적절한 권한을 갖어야 한다. 특히 인권침해여부의 조사작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국민인권위원회는 첫째와 둘째의 업무 및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권한정도는 규정하고 있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와 관련된 권한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국제적 원칙이 확립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1978년의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은 국가인권기구가 첫째, 조사권³³⁾ 둘째, 구제권³⁴⁾, 세째, 증인소환과 증거에 대한 접근권³⁵⁾의 권한을 갖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1992년 파리원칙과 1995년의 ‘유엔의 설립지침서’

① 파리원칙

30)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18쪽; 이러한 업무의 전략으로는 18-22쪽 참조

31)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23쪽;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문제에 관한 한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타 국가기관의 자문요청여부에 상관없이 자발적인 의견 혹은 권고를 제공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행정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법령에 대한 검토, 새로이 제정되는 법안에 대한 검토 등의 기능을 하여야 하고, 사법절차에도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23-27쪽 참조

32)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28쪽

33) “국가인권기구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자적인 사실조사기관(fact-finding agency)을 가져야 한다. 조사기관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범위내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민의 진정(complaint)을 조사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23문)

34) 국가인권기구는 권한범위내에서 개인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권한이 있어야 한다.(24문)

35) 국가인권기구가 사실조사, 조정(conciliation), 시정(redress)기능을 담당하는 경우, 모든 인권관련사실을 조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고 주요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25문)

파리원칙은 “사법기관에 유사한 권한을 갖는 국민인권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보충원칙” 항에서 “진정(complaint)과 청원(petition)을 조사,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을 권고한다.³⁶⁾ 이를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조정 등의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³⁷⁾, 관련자에 대한 정보제공, 유관기관에의 이송, 법률의 개정이나 규제 및 행정작용 개선에 대한 제안의 권한을 갖는다고 권고한다.

② 1995년의 ‘유엔의 설립지침서’

1995년의 ‘유엔의 설립지침서’는 이 파리원칙을 구체화해서 인권침해에 조사를 크게 ‘진정에 의한 조사 및 구제’와 ‘직권에 의한 조사 및 구제’로 대별하여 권한을 달리하고 있다.

‘진정에 의한 조사 및 구제’의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진정된 사건에 대한 조정 및 조사권(investigation)을 가져야 한다. 조정(conciliation)이란 조사를 보완하는 절차로 제3자가 구속되지는 않지만 강하게 영향을 받는 분쟁해결의 방식이다.³⁸⁾ 조사란 인권침해행위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다.³⁹⁾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권한⁴⁰⁾과 조사절차⁴¹⁾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사결과에 상응하는 구제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 자체의 의미가 없으며,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을 포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⁴²⁾ 따라서 구제조치로는 시정권고권⁴³⁾, 관할기관에의 이첩권⁴⁴⁾, 일정한 사안에 대한 결정권⁴⁵⁾, 강제명령권⁴⁶⁾, 결정공표권⁴⁷⁾ 등을 갖어야

36)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상황에 관련한 고발(complaint)과 청원(petition)을 조사,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각 개인 및 그 대리인, 제3자, 비정부단체, 노동조합 등에 의해 사안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7) 문제해결의 방식으로는 조정(conciliation), 구속력 있는 결정,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적인 방법을 들고 있다.

38) 조정이란 조사 개시전, 또는 조사에 갈음하여,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양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식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31쪽

39)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31-32쪽

40) 예를 들면 진정내용을 피진정인이나 피진정 단체에 통지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공문서를 포함한 일체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서면이나 구두로 관련정보의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교도소, 수감시설 등에 대한 방문권을 포함하여 현장조사를 행할 수 있는 권한, 당사자를 심문하기 위하여 소환할 수 있는 권한, 증언자 등에 기소면제특권을 부여할 권한, 조사대상이 되는 개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심문할 수 있는 권한, 증인의 소환 및 출석강제권, 증거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권한 등이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32쪽

41) 조사절차에서 필요한 권한으로는 절차규칙을 포함한 기준과 지침을 설정할 수 있어야하고, 조사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진정자와 조사협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32-33쪽

42)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33쪽

43) 국가인권기구는 관할범위에 따라 정부기관, 공무원, 개인 혹은 단체에 권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권고는 특정 사안에 대해 행해질 수 있고, 재발방지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권리고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33쪽

44) 국가인권기구는 당사자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기한내에 결정내용을 이행할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관련된 다른 정부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33쪽

45) 구제수단은 인권침해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가 회복되거나 경감될 수 있는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행정 결정의 취소나 관행·정책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임시적인 금지명령이나 임시구제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필요하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34쪽

46) 경우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에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명령권과 구속력 있는 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명령에 강제력을 인정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의 조사에 관한 국가인권기구의 권한을 상당히

한다.

‘직권에 의한 조사 및 구제’도 가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조사나 구제조치는 앞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직권조사의 권한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동, 여성, 빈곤계층, 부랑자,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자, 수감자 등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은 계층은 대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를 잘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식적인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⁴⁸⁾ 앞에서 본 권한외에 소송관여의 권한이 국가인권기구에 부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⁹⁾

이상이 위상과 권한의 측면에서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사안들이다. 이런 기준들은 각 국가에서만 들어질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개별국가의 국가인권기구가 이에 근접할수록 보다 공정하고 인권옹호적인 인권보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인권위원회의 개요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III. 법무부 인권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1. 인권법(안)의 개요

김대중 정부집권이래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일면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질서유지만큼이나 인권을 중시하고, 국가보안법의 확장해석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인권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⁵⁰⁾ 그러나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⁵¹⁾ 그것은 획기적인 수사기법의 도입없이 질서와 인권을 병존시키기 힘들며, 국가보안법을 확장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⁵²⁾ 사상전향제 역시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준법서약서가 이를 대체하고 있으며, 준법서약과 사상전향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⁵³⁾

그럼에도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민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변화시킬 의지인가는 제정되는 인권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34쪽

47) 엄밀한 의미에서 공표는 구제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제수단과 더불어 국가인권기구는 조사내용, 권고의견이나 결정의 공표권을 가져야 한다. 여론을 통해 알리고 논의를 유발하는 것 자체가 향후 예상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34쪽

48)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34쪽

49)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35쪽

50) 이 내용은 박상천법무부 장관의 국립대학교 강연(98.9.17)에서 나온 신정부인권정책의 내용들이다.

51) 심지어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권고사항을 보면 한국인권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 기본적인 노동권행사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권하루소식 98년 9월 12일자 참조

52) 이 점때문에 국제인권기구에서 폐지하도록 권고받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남용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것은 낮은 수준의 인권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53) 피에르 사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방문시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남용, 양심수 전면석방의 실패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개정, 준법서약서 폐지를 촉구했다. 한겨레신문 98년 9월 11일자 참조

법의 내용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 준비과정을 보면 신설될 국민인권위원회가 획기적인 인권옹호기관으로 자리잡으리라 예측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근거가 되는 인권법(안)의 준비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관련 인권단체나 국민의 의사수렴없이 심지어 인권전문가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법무부 일방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아직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인권법(안)의 전모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인권법의 개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피에르 사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인권문제는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법인인 국민인권위원회가 감시하게 되어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⁵⁴⁾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⁵⁵⁾에 참석한 한국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인권법은, -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할 국가의무를 규정하며,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개념을 규정하고, - 인권위원회에 범인격을 보장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 인권위원은 사회 각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⁵⁶⁾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인권위원회의 과제로는 “- 인권의 교육과 홍보, - 인권과 관련된 법, 법령, 구조, 프로그램 및 정책의 연구, 국가에 대한 자문, - 법집행공무원 예컨데 경찰, 교정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조사와 그 구제, - 국제인권위원회의 제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 그리고 협의 및 자문 - 유치시설과 복지/생생시설에 대한 조사와 그 개선을 위한 자문 - 비정부인권단체와 인권옹호자와의 협력”⁵⁷⁾ 등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국민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고른다면 먼저 위상으로 국민인권위원회에 범인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 업무로서 인권교육과 홍보, 국가기관에 대한 자문 및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업무의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권리가 주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조사권, 조정권, 시정권고권, 관할기관에의 이첩권은 주어질 것이다. 반면 결정권, 강제명령권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서도 말한 것처럼 국민인권위원회의 권한보다는 그 위상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상과 권한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여 본다.

2. 법무부안 비판 - 국가인권기구 위상과 관련해서

(1)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제

먼저 국민인권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확실히 외부에 알려진 것은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법인의 형태라는 점이다. 독립법인의 형태를 취한 이유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국제적인 기준들은 모두 독립성의 보장을 중시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물을 보아도 독립성의 보장을 중시하고 있다.⁵⁸⁾ 그러나 국민인권위원회를 독립법인으로

54) 한겨레신문, 98년 9월 12일자

55) 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1998년 9월 7-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56) Statement by Mr. KWAK Moo-Keun of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3rd Annual Meeting of the 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이하 Statement로 기술), 4쪽

57) Statement, 4-5쪽

58) 김한균, “국민인권기구란 무엇인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6·7월 합본호(통권 제21호), 9-22쪽 수록), 15쪽; 브라이언 버디킨, “인권전담국민기구는 왜 필요한가”(계간 사상, 96

하는 경우 과연 독립성이 보장될지는 미지수이다.

국민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려면 인권관련 법률집행기관들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최소한 갖추어야 한다. 먼저 조직의 법적인 독립성 및 운영상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⁵⁹⁾ 둘째 재정적 독립성이다. 국민인권위원회가 그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서 행정기관의 사전 및 사후 감독을 받게 된다면 독립성은 저해된다. 셋째 임면절차의 독립성으로 인권을 보장하려는 국가권력만이 국민인권을 보장할 수 있듯이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 사람만이 인권위원회를 이끌 수 있다.⁶⁰⁾ 넷째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2) 특수법인과 독립성

이하에서는 국민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독립성이 보장될지를 법적인 측면과 실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 법인형태로 운영되는 공조직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국책은행과 같은 특수법인기업, 소비자보호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같은 특수영조물법인⁶¹⁾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가 많이 착안했다는 소비자보호원을 중심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1)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

정부투자기관 등의 특수법인기업이나 특수영조물법인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⁶²⁾ 왜냐하면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수법인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⁶³⁾

정부투자기관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의결조직으로 이사회, 집행조직으로 사장, 감독기구로 감사를 두고 있다. 여기서 법인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것은 심의·의결조직인 이사회가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적이거나 하는 것이다. 즉 정부투자기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율성을 이사회가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관의 변경, 재정적 통제도 자율성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년 겨울호, 197-211쪽 수록), 206-207쪽

59) 여타 행정기관에 의한 간섭과 압력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독립성은 침해된다. 특히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나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국민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영향하에 놓인다면 국민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특히 치명적으로 저해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나 다른 행정기관의 간섭없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60) 따라서 인권기구의 의사결정자, 집행자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법무부장관의 추천이나 대통령에 의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한 의회와의 연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민인권위원회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정한 권한과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61) 이들 공기업 및 특수법인의 역사적 발전형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국민서관, 1992, 374-379쪽; 공기업과 영조물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1991, 375-376쪽

62) 물론 비독립적인 법인도 있을 수 있다. 일반행정기관이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철도사업은 행정청형 사업으로서 비독립적이다. 석종현, 앞의 책, 380쪽

63) 그렇다고 국가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가예산으로 들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인인 만큼 일정 정도 국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이를 종합한 것이 독립성의 개념보다는 자율성, 중립성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자율성의 개념은 정부투자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3조 참조, 중립성의 개념은 한국은행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법 제3조 참조

① 이사회

먼저 이사회는 투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⁶⁴⁾ 따라서 이사회의 자율성 내지 독립성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방식>

여기서 우리가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은 이사회의 구성방식이다. 먼저 당연직 이사로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원·부·처의 관계주무실·국장, 정부투자기관장·영평·간사⁶⁵⁾가 있고, 임명직이사로는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이다.⁶⁶⁾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방식은 주무부장관의 영향력을 상당히 크게 한다.⁶⁷⁾ 투자기관의 운영실제를 보아도 정부의 입장은 이사회를 통해서 거의 그대로 관철된다. 특히 주무관청소속의 당연직이사의 발언의 영향력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임명직이사의 경우 이들의 발언에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⁶⁸⁾ 임명직 이사의 경우 임명권이 정부에 있고, 임기가 3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사회 운영관행>

더욱이 해당 투자기관에서 이사회를 열기전에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사전협의를 받는 관행이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진 안건은 단지 이사회의 형식적인 심의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⁶⁹⁾ 이사회는 투자기관 운영의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지만 결과는 단지 정부의 입장을 찬성하고 이를 정당화해주는 거수기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만다.

64)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생산제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동법 제9조 제1항

65) 재정경제원소속 일반직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동법 시행령 제6조

66) 동법시행령 제12조

67) 이를 두고 정부와 투자기관의 연결성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김재훈, 정부투자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5, 29쪽; 그러나 이것은 동법 제3조에서 정하는 투자기관의 자율성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68) 당연직 이사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나는 이사회의 운영이 단지 정부투자기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외관을 부여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따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조정되는 만큼 이중운영의 문제점이 생겨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둘째는 이중운영의 결과 사후책임소재를 불투명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김재훈, 78쪽

69) 주무부처가 투자기관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투자기관의 자율성을 해치게 되어 오히려 경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토의되고 결정할 전략적 내용이 주무부처와 미리 협의하고 내락을 받지 아니하면 이사회에 상정조차 할 수 없다든지, 경영진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의사결정이 예산지침, 행정지침 등에 의해 간섭과 규제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다. 대체로 간섭과 규제가 행해지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사회 상정안건에 대한 간섭, 업무범위 및 투자의 자율성 제한, 판매가격(또는 요금) 결정 절차 및 방식의 규제, 자금조달 및 운영의 자율성 제한, 조직 및 정원운영의 통제, 예산편성 및 보수수준의 통제 등이다. 이러한 과도한 통제는 자연히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적극적이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유도하게 된다. 김재훈, 앞의 책, 73쪽; 정부투자기관의 규제실태에 대해서는 강신일, “공기업민영화와 정부규제완화”(한국개발연구 제9권 제4호(1987), 143-149쪽 참조

② 정관

다음으로 정관⁷⁰⁾의 제정 개정에 관한 것이다. 투자기관 운영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주무부장관의 인가⁷¹⁾가 필수요소가 됨으로써 주무부처는 투자기관의 기본운영의 골격에 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③ 재정적 독립성

동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재정경제원이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와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키도록 하고 있다.⁷²⁾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는 예산편성지침과 이사회의 결시에 주무부처의 입장을 충분히 관찰시키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원에서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의 운용방안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 범위 역시 예산사용, 조직, 이사회, 목표설정 등에 포괄적으로 미친다.⁷³⁾ 또한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있어서도 이사회, 주무부처의 장관, 감사원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 운영에 관한 실체를 보면 주무부처와 재정경제원의 개입으로 자율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⁴⁾

④ 소결

이상으로 보아 정부투자기관의 운영은 전적으로 자율성이 결여되고 독립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것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특수영조물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특히 법무부가 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화하는데 힌트를 얻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경우를 보아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2) 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이다. 동법은 크게 보아 소비자의 권리, 한국소비자보호원 설치규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법이 차별금지조항의 신설,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사·권고의 권한을 갖는 구제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보호원은 주무부처로부터 자율적인 기관인가? 이 점을 보기 위해서 이사회, 정관, 예산상의 문제로 구별하여 보기로 하자.

① 이사회

소비자보호법 역시 소비자보호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다.⁷⁵⁾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데, 그 임면권의 행사를 보면 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⁷⁶⁾ 그리고 부원장 및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하도록

70)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는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대한 사항 5.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사항 6. 임원 또는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식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사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71) 인가란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동의)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이다. 김남진, 행정법I, 법문사 1998, 260쪽

72) 동법 제21조 내지 제22조

73) 자세한 것은 김재훈, 앞의 책, 74-76쪽 참조

74) 이 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다음을 참조. 조경규,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50-51쪽

75) 소비자보호법 제33조

하고 있다.⁷⁷⁾ 앞서 본 투자기관과 비교할 때 부무부처의 당연직 이사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상의 독립성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추진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주무부처는 원장에 대한 제청권, 부원장 및 다른 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 운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본 정부투자기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② 정관

소비자보호원의 정관⁷⁸⁾의 제정 개정에 관한 것이다. 투자기관 운영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주무부장관의 인가가 필수요소가 됨으로써 주무부처는 투자기관의 기본운영의 골격에 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③ 예산상의 독립성

다음으로 예산상의 문제를 보면 소비자보호원의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및 사후감독에 있어서 주무부처의 영향하에 있다.⁷⁹⁾

이러한 예산운영의 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과정에 있어서까지 개입할 수 있다. 예컨데 재정경제원장관은 소비자보호원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⁸⁰⁾ 이러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개입조항은 사실 예산사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소비자보호원은 재정경제원의 산하기관으로서 위치지를 수 있는 것이며 그 운영과정에 재정경제원의 영향력을 끌 수 밖에 없다.

④ 소결

이상에서 보았듯이 특수법인의 경우 해당 주무부처의 산하조직으로 관련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힘들다. 물론 이를 기관의 역할로 보아 절대적인 독립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⁸¹⁾ 그래서 운영과정상 필요한 독립성은 엄격한 의미의 독립성이라기 보다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법제도를 보아도 그 필요한 자율성이 저해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76) 동법 제31조 제3항

77) 동법 제31조 제4항

78)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는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삽제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동법 제27조

79) 소비자보호원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2항; 그리고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49조 제3항

80) 제49조 제1항

81) 왜냐하면 공기업의 운영은 국가정책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가정책은 해당 주무부처를 통해서 관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특수법인의 경우 독립성은 단지 형식적인 의미의 독립성 즉 '조직상의 독립'으로 죽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3) 법무부의 국가인권기구 - 국민인권위원회가 인권보호원인가?

① 국민인권위원회의 법적 틀

<구조>

법무부가 소비자보호원의 위상을 본 때 국민인권위원회를 만든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질 것이다. 먼저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 다음으로 각종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위원과 인권위원장, 마지막으로 분쟁처리를 맡는 분쟁처리기관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독립성 확보와 관계되는 것은 이사회나 인권위원의 구성과 임면방식, 정관의 인가권, 예산상의 독립성, 관계기관의 파견 가능성 등이다.

<이사회>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이사 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로 구성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같은 투명한 절차는 확보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의회와의 연결성 역시 확보되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반영성 즉 구성의 다양성 역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혹은 장관의 고려사항으로 전락될 가능성 이 크다. 이런 형태로는 구성이나 임면절차나 구성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관>

다음으로 국민인권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정하는 정관에 관한 것으로 법무부산하기관으로 국민인권위원회가 존재하게 되면 정관에 대한 인가권은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될 것이다. 정관은 국민인권위원회 운영의 기본지침을 정하는 것인 만큼 기본업무, 재산 및 회계, 내부 규정에 관한 것을 포함할 것이고 법무부장관은 이 정관에 대한 인가권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예산>

예산상의 문제를 보면, 국민인권위원회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및 사후감독에 있어서 법무부의 통제하에 있게 될 것이다. 법무부는 예산의 통제권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의 기본 업무에 대해서까지 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통제권까지 법무부가 갖는다면 국민인권위원회의 종속성은 심화되고 과연 국민의 인권홍보와 교육은 몰라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파견제도>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파견제도이다. 실제 특수법인의 공통점의 하나가 파견제도인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든 없든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인권위원회도 실제로 관계행정기관에서 전문자를 파견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국민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작업을 할 때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인력을 파견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⁸²⁾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 인력의 필요성이든 아니면 인력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차원이든 파견은 국

82) 유엔의 설립지침서도 파견문제에 대해서 권고안을 내놓고 있다. 지침서는 파견을 긍정하나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Centre for Human Rights, 1995, 32쪽

민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역작용할 것이다. 파견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했던 부처의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우에는 국민인권위원회의 조사업무가 저해되기에 이를 것이다. 또한 조사전에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결과를 조율하는 인적 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평가 - 인권보호원

이러한 독립법인의 위상으로 국민인권위원회를 만든다면 그것은 법무부 관료수준의 인권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공언한 획기적인 인권의 향상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민인권위원회를 앞서 본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특수법인과 동렬적인 위치에서 구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⁸³⁾ 국민인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이다. 즉 조직상의 독립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업무 자체가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자문 및 조언 업무를 하고, 이를 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구제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⁸⁴⁾ 따라서 국가기관과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양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어야 하는 것이다.⁸⁵⁾

따라서 이들 업무수행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들 즉 안기부, 법무부, 사회복지부 등의 기관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이들 중앙행정기관들에 국민인권위원회의 조직, 인사, 예산, 감독 등의 권한이 부여되거나 아니면 실제 운영과정에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과연 인권위원회가 공정하게 조사하고 자문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아직도 시원한 해결이 없는 의문사에 대해서 국민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⁸⁶⁾ 법무부의 절대적 영향하에 있는 특수법인으로서 국민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한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는가?

이렇게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중요시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독립적이어야만 인권위원회가

83) 왜냐하면 앞서 본 특수법인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정부분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조직들이 다. 따라서 독립성보다는 자율성이 필요한 조직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분쟁처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3의 중립자로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84) 국민인권위원회의 업무내용을 보면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관련 법령과 정책의 연구, 국가 자문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특히 안기부, 검찰 및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깊이 조사하고 구제조치를 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다. 박상천법무부장관은 1998년 9월 17일 국민대학교 강연에서 국민인권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가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를 기존의 제도적 틀로는 조사하고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포럼에서 한국을 대표해 보고한 꽈무근의 보고서에 의하면 법집행공무원 예컨대 경찰, 교정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조사 및 유치시설과 복지/갱생시설에 대한 조사와 그 개선을 위한 자문도 국민인권위원회의 업무로 되어 있다.

85) 물론 국민인권위원회가 개인간의 인권침해 행위 또는 차별행위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86) 의문사의 진상규명이 어려운 것은 공안기관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규명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의문사는 지난 군사정권의 주장대로 자살일 수도 있고, 관련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정권에 의해 자행된 타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일이다. 즉 정확한 진상규명이 없이는 여전히 의문사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만약 이 의문사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타살이라면 이를 밝혀내야 하는 주체는 이 사건을 저질렀을지도 모를 기관과는 독립된 조직에 의해서 조사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갖는 권한행사가 독립적으로 행사될 것이고, 인권보장을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획기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국민인권위원회를 만든다는 것과 소비자보호원류의 독립법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호 논리모순이다. 소비자문제와 인권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소비자문제로 인권문제를 환원하는 것 자체가 인권개념의 축소이며, 현 정부 인권의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징표는 아닐까?

법무부는 이러한 논리모순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권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려고 한다면 특수법인의 형태로 국민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국민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법무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⁸⁷⁾ 만약 그렇지 않고 획기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독립법인을 두겠다는 것은 허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럴 때 만들어지는 국민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옹호가 아니라 정부의 대외홍보용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3. 법무부안 비판 - 국가인권기구 권한과 관련해서

(1) 위상과 권한

권한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히 외부에 공개된 것이 없다. 다만 국민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낮은 경우 예상되는 권한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조사 및 구제조치에 관련해서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즉 인권교육과 홍보, 국가기관에 대한 자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작업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 정도의 위상하에서 법무부가 전체 사업 또는 개별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사업도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2) 조사권

따라서 조사와 관련된 권한들⁸⁸⁾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과연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나아가 직권에 의한 조사의 영역이 매우 넓은데 과연 직권에 의한 조사권을 자주 발동하려고 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3) 사회 경제적 권리

다음으로 권한이 주로 시민적 정치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문제도 많다. 국민인권위원회는 시민정치적 인권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인권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는 물론 기업등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권한은 최대한 광범위한 것이 좋다.

4. 법무부안에 대한 대안

(1) 문제의 소재

진정 법무부가 인권의 획기적인 증진에 중점을 둔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으리

라 본다. 국민인권위원회의 위상은 그 역할과 권한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대별해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권교육과 홍보, 국가 자문 등의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특히 안기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검찰 및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약 국민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홍보, 국가기관에의 자문 등의 역할을 주로 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인권법제정이나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이런 업무는 민간인권단체에 대한 지원법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넘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할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상정한다면 적어도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공법인의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위상이 생각될 수도 있다.⁸⁹⁾

그러나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조정해야 하는 분쟁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또는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업무가 주무관청인 법무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인권기구가 법무부의 산하단체의 성격을 가져서는 안된다.

오히려 문제가 된 개인과 국가기관(예컨대 안기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검찰 및 경찰) 등과 전혀 다른 제3의 조직으로서 위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는 절대로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재 법률로 설립된 특수법인의 경우 모두 주무부처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고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바로서는 더더욱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2) 대안의 방식

① 변형된 독립법인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먼저 같은 특수법인체라 하더라도 주무부처인 법무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큰 조직형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인형태의 조직은 아무리 변형해도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특히 정관에 대한 인가권을 주무부처가 가지는 한 변형의 한계가 있다.

오히려 변형된 독립법인보다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치지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럴 때 이사회라는 조직은 불필요해진다. 오히려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법률집행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조사와 공표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예산의 독립성도 확보가능하다. 유사한 조직형태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들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인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87) 가령 국민인권의식의 수준으로 보아 국민인권위원회가 인권홍보 및 교육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단지, 아니면 국민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민감한 정치적 인권탄압에 대해서까지 공정하게 조사하고 권고하는 것이 실제 어렵다든지 아니면 면 장래 검토과제로 하겠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88) 각주 40 및 41 참조

89) 그러나 국가인권기구의 성격을 본다면 국가에 의한 소비자보호와는 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소비자보호라는 것은 국가행정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이에 관련된 지식 정보 연구 등의 역할을 소비자보호원이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과 개인사이의 분쟁에 대한 조정의 역할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3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② 독립규제위원회의 형태

다음으로 국민인권위원회에 조사의 권한을 넘어 법적 구속력있는 결정의 권한을 갖는 조직으로 하려는 경우 국민인권위원회의 위상은 독립규제위원회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현행 헌법상의 선거관리위원회 내지 감사원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형태가 획기적인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는 준입법, 준사법의 권한을 가지게 되며 언제든지 인권억압자로 돌변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확실한 견제장치로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준사법권을 가짐으로써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넘어 법적 구속력있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국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V. 글을 마치며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인권을 옹호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국민인권기구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조직의 창설에 불과하며 어려운 시대에 예산낭비의 조직으로 전락될 것이다.

법무부의 인권법(안)의 성안작업을 보면서 상당한 서글픔을 느낀다. 민주적 참여가 없는 인권법, 국가의 일방적 법제정으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철저한 객체화, 인권단체의 비난 속에서 설치될 국민인권위원회, 이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12월 10일에 엄마이지 말고 모든 국민이 인권의 의미를 깨닫는 국민의 축제로서 인권법의 제정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만약 12월 10일에 엄마여 무리한 법제정을 시도한다면 12월 10일은 인권의 날이 아니라 반인권의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더불어 진정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권력에 대한 갈구가 더 커질 것이다.

I. 인권에 관한 일반법의 필요성

인권법이라는 인권에 관한 일반적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법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인권관련 국내의 여러 법령들을 상기시킨다.

즉, 헌법의 기본권조항들이 바로 인권법이며, 또 우리는 이미 국제인권법의 대명사인 국제연합의 A규약과 B규약을 비준하였으므로, 그것은 이미 우리 국내법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내의 법령들도 거의 대부분 인권과 관련이 있는 인권옹호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새로운 인권법의 제정은 불필요하거나 중복이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첫째, 인권의 최고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법률의 존재는 법체계상 부적절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여러 헌법적 가치와 요청들에 대하여 각종의 기본법(교육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언론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나와 있는 것을 상기할 수 있다.

둘째, 국제인권법은 비준하였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만, 우선 그 규모와 종류가 방대하여 그 자체로 적용과 집행 그리고 인권의 장전으로서 교육기능에서 비효율적이다. 나아가 그것이 비록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국내법에 비하여 그 구속력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아직 일반적 범인식에서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서 우리가 이미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하는 국내의 법령이나 행정행위들이 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고 또 그것이 오히려 국제인권법의 효력을 부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의 여러 규범적 기준들을 다시 정리하여 국내법으로 완전히 구현하는 것이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셋째, 개별 법령으로 이미 인권보장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 기존의 법령들 때문에 인권 실현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인권법이라는 인권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인권침해법령들의 부당한 효력을 일제히 정지시키거나 개정을 촉구하는 효과를 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법은 모든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서 인권에 대한 지침으로 기능하게 되어 개별법령의 법적 적용이 단지 부문적 사항이 아니라 헌법의 인권적 차원의 적용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 즉 인권의 최고규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인권헌장 식의 인권법의 제정은 일반인들의 인권의식의 함양에도 기여 할 수 있다. 즉 인권의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나의 가상적인 예로서 국민 모두에 인권헌장의 수첩을 소지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II. 인권에 대한 일반법인과 차별금지의 특별법인가?

우리 법무당국이 모델로 삼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있는 카나다, 뉴질랜드 등의 경우 그 인권법 혹은 인권위원회법은 인권에 대한 포괄적 권리장전과는 거리가 있다. 그 법들은 대체로 성, 종교, 사상, 인종, 나이, 장애여부, 혼인관계, 가족관계, 성적 성향 등에 의한 차별들만을 문제삼고 있다. 물론 그 차별의 영역은 광범위하다. 고용관계(채용, 배치, 승진, 교육, 임금, 해고 등이 포함됨), 관청이나 교통시설 등에의 접근관계, 재화와 용역의 급부관계, 토지와 주거시설의 취득과 이용관계, 교육관계, 기타 성희롱, 인종적 희롱 등의 문제들이 규정되어 있다.

물론 그러한 차별문제가 인권에서 중요한 영역임에는 틀림없지만, 인권법의 이름으로 그것만을 다루는 것은 인권의 협소화를 가져온다.

언급한 국가들의 인권법은 인권을 시민권과 사회권으로 나눈다면 주로 시민적 권리에 그것도 평등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사회권은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인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단지 시민권적 의미의 평등의 문제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목도하게 되는 비인간적 상태들, 미성년자 매춘,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당한 교육체제, 가난에서 오는 기아와 질병 등은 과연 인권의 문제가 아닌가? 그것이 모두 개인의 선택과 계으름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우연의 횡포의 산물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들의 전체적 의사와 그에 따른 체제의 구조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즉, 사회경제적 곤란과 고통은 체제로부터 강요당하는 불평등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인권법이 부당한 불평등을 시정하고 그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려는 것이라면, 마땅히 위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사회권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법과 인권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사회적 문제가 바로 인권침해의 문제가 되므로 그것은 인권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사실 사회경제적인 제분야과 문제를 인권법에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에 관해 수많은 사회복지관련 법령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의 제시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사회적 인권의 지표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는 국제적으로 시민권과 함께 사회권이 인권의 한 측으로 설정되고 규정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그 재원의 마련에서 또 다른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해소를 위한 국가의 활동을 국가의 일방적인 시혜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재원의 확득을 일방적인 수취로 볼 수도 없다. 사회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활동은 사회체제의 강요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고, 그에 관련한 자산의 이동은 말하자면 부당 이득의 반환의 논리로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적 여건의 구조적이며 지속적인 변동 즉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속에 부의 이전과 증감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특정 부문, 계층 등에 부당한 사회경제적 곤란이 전가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구제와 보호는 결코 국가의 일방적인 수취와 시혜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노약자와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회권은 어떤 임여적인 부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무일 수 있다. 즉 그들의 필요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폭력으로서 일종의 범죄행위와 같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자유권과 시민권의 침해가 범죄를 구성하듯이 말이다.

셋째, 사회권의 규정과 국가의 의무의 규정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부당한 귀결을 가져온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도덕적 해이의 논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권옹호활동과 개인의 책임성 및 자율성은 반드시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위험은 사회권의 규정과 시행을 국가의 일방적인 수혜로서 보는 데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그러나 사회권옹호활동이 부정의의 시정과 절대적 필요에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위험성은 거의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권은 국가의 권위주의와 개인의 왜소화를 조장하는 쪽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사회권 운영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장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복지는 일차적으로 가족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가족구성원들 상호간의 부조를 긍정하고, 국가는 그에 대하여 세제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조건의 완화와 보조등의 간접적 개입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치매 노인의 사회권에 있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설수용과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가족이 간병을 맡고, 국가는 다만 그로 인한 휴직을 보장하는 등의 간접적 보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III. 인권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제안

인권법은 하나의 법률로서 헌법 아래에 있다. 법의 체계상 헌법의 기본권조항들을 기준으로 하여 편별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국제인권조약과 인권선언 그리고 개별법령의 인권 조항들을 추출, 비교, 첨삭, 재정리할 것이 요청된다.

<첨부 참조>

III. 인권의 개념과 인권위원회의 위상

현재 인권법 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조직의 문제이다. 정부는 일단 이를 국가기관이 아니라 독립 특수법인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법인이라고 하여도 그 주무관청은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국가기관과 마찬가지의 귀결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할 것인가, 아니면 특수법인으로 할 것인가라는 형식이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위상, 기능, 조직 전체에서 어떻게 인권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실질에서 생각하고 고민되어져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권이 인권위원회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위원회는 국가를 위한 곳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야 인권운동단체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인권위원회는 소외받고 억눌려 온 모든 이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시 인권위원회에는 정부와 민간 인권운동단체들의 균형과 조화가 절실하다.

인권위원회에 앞서 인권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인권위원회의 위상정립의 출발점으로 삼아보자.

1. 인권의 전국가적(시원적), 초국가적(보편적) 성격

1) 왜 기본권이 아니고 인권인가?

: 기본권의 국민국가적 성격 - 인권의 전(前)국가적 성격과 초(超)국가적 성격

- 첫째, 독일법계 국가에서 기본권은 국가의 헌법에 의해 비로소 규정되는 의미가 강함, 상위 권위에 의한 수권임, 따라서 국가, 이전의 천부적 권리, 각 개인에 내재한 인간의 필요와 자유의 승인이라는 관점이 약함

- 둘째, 그것은 하나의 국민국가를 상정함, 즉 국민국가를 벗어나는 순간 그 권리성은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됨, 즉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승인될 수 있으며, 국민국가의 주권을 초월하여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 승인되는 것이라는 관점이 약함

2) 인권의 해방적 성격 : 영미에서 인권개념의 발전의 이유

- 근대 영국은 윌리엄 노르만 공의 잉글랜드 정복에서 연원한다. 즉 영국은 프랑스의 식민지로 시작한 것이다. 다수의 앵글로 색슨의 국민들은 프랑스계의 노르만 인에 지배하에 있었다. 여기서 지배자의 법질서와 피지배자들의 원초적 권리에 대한 구분이 보다 명확해진다. 이는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인들은 거의 앵글로 색슨계이며, 또 종교적으로도 영국의 국교회를 거부하는 청교도들이었다.

이와 같은 인권의 해방적 성격은 인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첨부 참조>

3) 인권의 생활세계적 성격 : 체계의 자족성(Autopoiesis)을 완화하여 정의와 인간의 존엄에 기여

- 기본권은 하나의 국민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고, 또 그 법체계에 의하여 해석되고, 구현된다. 즉 <법령 - 행정행위 · 사법행위 - 법령>이라는 자족적 순환과정을 갖는다. 기본권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기본권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부인되는가 모두 공식적인 법체계에서 스스로 확인된다.

- 그러나 인권에 대한 판단의 심급은 일개 국민국가가 아니다. 그렇다고 어떤 국제적 기구도 아니다. 인권에 대한 판단의 심급은 곧 역사 전체이고, 보편적인 정의의 이념이다.

기본권에 대하여는 국가기구가 최종적인 말을 할 수 있어도, 인권에 대하여는 그럴 수 없다. 인권은 모든 개인에게 열려 있으며, 전세계에 개방되어 있다. 인권은 체계가 아니라 생활세계의 영역에 속한다. 인권은 생활세계에서 계속하여 체계를 수정하고 체계를 재구성하는 힘을 발휘한다.

2. 인권위원회의 성격

그러한 인권의 시원적, 보편적, 해방적, 민간적 성격은 인권위원회의 위상에도 직결된다.

위와 같은 인권의 성격은 인권위원회가 결코 또 하나의 국가적 사법기구가 될 수 없게 한다.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로서의 법기구와 구분되고, 또 협조하며, 때로는 긴장관계에 놓이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원회는 민간 생활세계에서의 해방의 힘으로서의 인권을 폐쇄적인 체계인 국가에 계속해서 불어 넣어 주어 그 생명력을 강화시켜주는 있는 창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사적으로나 우리의 역사에서 인권위원회의 설치가 문제가 된 사실 자체는 기존 법체계의 부정의를 반영한다. 즉 하버

마스 식으로 말하자면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원회의 설치는 그에 대한 생활세계 민중들의 저항과 인권의 자력구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의 한 부분으로 위치시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물론 현재와 같이 민간 차원에서의 인권옹호활동으로 만족할 수만도 없다. 그리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공공단체로 위치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특수법인의 발상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특수법인에는 주무관청이 있고, 그로부터 감독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인권위원회의 상폐의 관건이 있다고 본다. 인권위원회는 그 민간적 성격으로 볼 때,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주무관청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주무관청의 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민간단체들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유지케하여야 한다. 즉 행정기관의 감독보다 민간단체, 국민들의 감시와 독려로서 움직여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인권위원회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자칫 인권위원회를 또 다른 국가기구로 전환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인권옹호활동을 조장하며, 국민들의 인권침해의 구제를 도와주고, 국민들 간의 인권의 충돌시 그 조정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이 까다로운 행정적, 법적 문턱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를 대신하여 제기하여 주고, 또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옹호의 구체적인 법집행은 원칙적으로 각종, 각급의 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위원회는 새로운 기구로서 세워지기보다 기존의 인권옹호시설들을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구의 팽창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선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지역 검찰청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인권위원회의 소속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기존의 인권 혹은 사회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들을 인권위원회와 연계하여 활성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리고 재야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의 인권옹호와 감시기능을 인권위원회가 수용하고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각종 민간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회의 저변을 구성하여 연계와 협조를 통해 인권위원회의 저력을 형성하고 또 그 수족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법의 성격과 효력

이 법은 헌법의 기본권 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헌법의 기본권규정의 최고규범성과, 이미 비준된 혹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들의 국내법적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여타의 다른 인권관계법령보다 상위에 있으며, 이 법에 위반하는 다른 법규들을 무효로 하며, 다른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인권헌장의 구성

1)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편별의 기준으로 삼음. 인권법은 하나의 법률로서 헌법 아래에 있다. 법의 체계상 헌법의 기본권조항들을 기준으로 하여 편별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국제인권조약과 인권선언 그리고 개별법령의 인권 조항들을 추출, 비교, 첨삭, 재정리

3. 개별적 내용

1)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 존엄성의 천명에 아울러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좋을 듯.
*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도 주의를唤기시키는 것이 좋을 듯.
* 국가의 인권옹호활동이 개인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규정하는 것이 좋을 듯

* 개인의 행복추구에 대한 원칙적 보장과 아울러 타인에 직접적 피해와 정의와 평화에 명백한 위협인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함을 부기하는 것이 좋을 듯

* 개인의 행복추구가 사회의 연대성을 해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충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좋을 듯

* 생명권을 신설하고, 사형의 문제에서 사형의 집행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인다.

<인간의 존엄>

1. 모든 사람은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인격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2.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방지하고 구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국가의 인권보호의 활동은 개인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된다.

<행복추구권>

1.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거나 정의와 평화를 명백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자기의 뜻에 따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2. 개인의 행복의 추구가 사회적 연대의 소홀로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보충이 있어야 한다.

야 한다.

① 40세 이상의 자발적인 독신자, 동성의 부부, 자녀 출산을 배제하는 계약혼인의 당사자 그리고 둘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는 인구의 부양과 관련한 부담을 진다.

② 사치재의 소비, 과도한 규모의 주택, 과도한 에너지의 소비에는 특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생명권>

1. 사형은 선고할 수 있으나, 그 집행은 유보되어야 한다. 수형자의 진지한 결단에 의해 적극적으로 그 집행이 희망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2. 18세 미만의 소년에는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 임산부에 대해서 사형은 집행될 수 없다.

* 헌법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值를 가지며, 幸福을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 세계인권선언 제4조 아무도 노예의 처지에 뮤여 있지 않다. 노예제도와 인신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 세계인권선언 제5조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 세계인권선언 제3조 : 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리를 가진다.

* 시민권규약 제6조

제1항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2항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범행이 이루어진 당시의 시행 법률에 비추어 가장 중대한 범죄인 때에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4항 사형이 선고된 사람에게는 특사나 감형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형선고에 대한사면, 특사 또는 감형은 모든 사건에 주어질 수 있다.

제5항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임신중인 여자에게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 시민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 사형철폐

2) 평등권

* 평등권의 보다 상세한 규정이 필요

헌법의 규정은 너무 간단하다. 우선 차별금지의 근거로서 성, 종교, 사회적 신분만을 들고 있다. 그것은 물론 예시적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차별금지의 영역에서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이라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

현재 법무당국의 인권법제정에 있어서도 이문제가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불문법계 국가, 즉 인권장전을 성문헌법에서 갖추고 있지 못한 국가들의 인권법 혹은 인권위원회법에서 주된 인권옹호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평등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인권법에서는 차별금지의 사유들과 차별금지의 영역들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평등의 문제는 곧 합리적 차별의 문제이기도 하다. 무조건적인 평등은 오히려 불평등일 수 있으며, 합리적 차별이 바로 평등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 합리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법철학적으로 정의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덕성, 재능, 필요, 성과 등에 따른 차별 그리고 그 차별이 곧 보편적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차별적 지위에 대한 균등한 기회의 보장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의의 기준과 조건의 성취여부를 둘러싸고 항상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실제상황에서는 모든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성문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권법에서는 단지 정의라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나아가 정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차별을 시행하는 측과 차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는 측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음.

<평등의 우선성>

1. 어떤 경우에서도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차별적 대우는 금지된다.
2. 정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기회균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을 시행하는 측 혹은 차별에서 이익을 보는 측이 부담한다.

<부당한 차별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1.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하는 차별
- 2.임신과 출산의 이유로 하는 차별
- 3.미혼, 기혼, 독신, 이혼, 별거, 사별, 동거상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
- 4.특정 종교 혹은 무종교의 신념을 이유로 하는 차별
- 5.특정의 사상과 신념 혹은 무사상의 신념을 이유로 하는 차별
- 6.피부색, 인종, 출신 인종, 출신 국가 혹은 지역, 출신 학교에 의한 차별
- 7.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질병, 기타의 결함 그리고 외모에 의한 차별
- 8.취업 상태인지 실업상태인지 혹은 사회보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차별
- 9.특정의 성적 성향 즉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 10.일의 성질과 관계없는 학력에 의한 차별
- 11.형사소추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및 면소판결을 받은 사실 그리고 유죄판결 후 사면, 복권된 사실에 의한 차별

<차별금지의 영역>

- 1.고용취업, 승진, 해고, 임금
- 2.교육, 의료,
- 3.언론
- 4.재화와 용역의 금부
- 5.공공시설의 이용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의 책임>

정의에 부합하는 차별의 경우에, 차별로 인한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는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덕성을 차별받는 이들의 처지가 보다 악화되는 쪽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헌법 第11條

-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뉴질랜드 인권법, Human Rights Act, 1993

21조 차별금지

제1항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 a)성, 임신과 출산을 포함
- b)혼인 상태
 - i) 미혼
 - ii)기혼
 - iii)별거
 - v)이혼
 - v)사별
 - vi)혼인유사상태
- c)종교적 신념
- d)종교 일반 혹은 특정종교에 대한 불신의 윤리적 신념
- e)피부색
- f)인종
- g)출신 인종 혹은 국가
- h)장애,
 - i)신체적 장애 혹은 부상
 - ii)신체적 질병
 - iii)정신적 질병
 - iv)지적 혹은 심리적 장애 및 부상
 - v)기타 다른 정신적, 생리적 및 해부학적 결함과 이상
 - vi)인도견, 훈체어, 기타 다른 안내 수단에의 의존성
 - vii)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
- i)나이 16세 이상부터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 j)정치적 견해, 특정의 정치적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 것 혹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견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 k)고용 상태
 - i)실업상태
 - ii)사회보장의 법률들에 의한 수혜자 및 보험금수익자
- l)가족관계
 - i)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자녀 혹은 다른 요보호자를 돌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
 - ii)위와 같은 책임이 없는 것
 - iii)특정의 사람과 혼인하였거나 혹은 혼인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
 - iv)특정인의 친족이라는 사실
- m)성적 성향, 즉 이성애, 동성애,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적 성향

제2항 제1항의 차별금지의 사유가

- a) 본인 자신이나 친족 혹은 친구에게 있다는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 b) i) 현재 혹은 과거에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 ii) 현재 혹은 과거에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추정과 의심으로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제22조 고용에서의 차별

제1항 해당하는 일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경우, 사용자 및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이법의 차별금지의 사유들을 이유로,

- a) 채용지원자의 고용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 b) 같거나 실질적으로 상용하는 능력을 가진 채용지원자 및 피고용인에게 고용, 근로 조건, 연금, 기타 다른 이익 그리고 교육, 승진, 전보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되며,
- c) 고용관계의 해지나 기타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되며

d) 퇴직 혹은 퇴직의 요구에서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제2항 직업소개의 업무를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 대하여 이법의 차별금지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제44조 재화와 용역의 급부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 공중에게 재화와 시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법의 차별금지의 사유를 이유로

- a) 그러한 급부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으며,
- b) 급부를 행함에 있어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의 시설에는 은행, 보험 등 금융관계 시설들을 포함한다.

제3항 어떤 단체나 그 단체의 지부는 이법의 차별금지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으며, 또 회원들 간에 차별대우를 하여서도 안된다.

제4항

제53조 토지, 주택, 기타의 수용시설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 누구든지 이법의 차별금지의 사유를 이유로

a)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혹은 주거 및 업무용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으며,

b) 그 처분에 있어 차별을 두어서도 안되며,

c)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거 및 업무용 시설을 구하거나 구해놓은 사람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되며,

d)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토지와 주거용 및 업무용 시설을 점유할 권리를 부인하여서는 안되며,

e)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혹은 토지와 주거 및 업무용 시설의 점유에 관한 권리의 해지에서 차별을 두어서도 안된다.

제2항

제57조 교육기관에의 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 교육기관과 그 종사자는 이법의 차별금지의 사유를 이유로

- a)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으며,
- b) 학생들의 입학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되며,
- c) 교육시설에서 제공되는 혜택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거나 제한하여서도 안되며,

d) 퇴학이나 징계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항

기타의 차별

제61조 인종 간의 불화

제62조 성희롱

제63조 인종희롱

3) 다른바 “사법보호청구권”

*포괄적인 사법보호청구권의 개념

종래의 신체의 자유와 재판청구권을 하나로 합쳐 사법보호청구권으로 보고자 한다.

헌법에는 제12조에 신체의 자유로서 형사절차에 관한 주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13조에 형벌불소급의 원칙, 제27조에 재판청구권과 무죄추정, 진술권 등이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정을 사법보호청구권으로 포괄하는 것이 좋을 듯 함.

그리고 거기에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민사절차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물론 주된 내용은 형사절차에 관한 것이 될 것임.

*변호사에 대한 접근권의 보장

법적 보호의 구체적인 모습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다. 이를 사법보호청구권이란 인권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민, 형사상 곤란을 막론하고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불문하고 법적 보호와 조력 혹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 간편하고 저렴하게 변호사 내지 준 법조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피구금자에서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분을 확실하게 함

<사법보호청구권과 공정재판청구권>

1. 인간은 누구든지 부정의의 위협에 대하여 사법기구에 도움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상의 범죄의 피해자 혹은 범죄인의 혐의를 받는 자 그리고 민사상 법익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주장을 받은 자는 누구나 신속하고 저렴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법적 분쟁의 당사자는 재판 이전에 공신력이 있으며 효율적인 조정기구를 통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자격있는 법관에 의하여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통하여 재판받을 수 있다. 어느 경우나 당사자의 진술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형사절차보호권>

형사상의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와 소추의 대상이 된 피의자 및 피고인 혹은 유죄판결은 받은 수형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1. 피의자는 본인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그가 받고 있는 혐의의 성질과 그 이유를 신속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통고받아야 한다.
2. 피의자는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또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3.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형사정의를 위하여(interests of justice) 필요한 경우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비용부담 없이 법적 조력이 주어져야 한다.

4. 逮捕 · 拘束 · 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現行犯인 경우와 長期 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구속영장의 발부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관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を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 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 · 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6.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查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7. 被告人の 自白이 捷問 · 暴行 · 鞭迫 · 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の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8. 피고인에 재판에의 출석과 진술권이 보장되며, 신속하여 공개적인 심리를 통하여 재판받아야 한다.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를 위하여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받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9.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자신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10. 구속피고인의 경우 기결수와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하며 형사절차 및 시설의 보안상의 필요로 인한 경우 이외에 그 자유가 제한되지 않으며, 변호인과 아무 방해 없이 접견할 수 있으며, 의사에 의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11.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헌법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 拘束 · 押收 · 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 · 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 · 拘束 · 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인 경우와 長期 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を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を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 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

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 · 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查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の 自白이 捷問 · 暴行 · 鞭迫 · 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の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헌법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遷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產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行위가 아닌 親族의 行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4항 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제5항 刑事被害人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헌법 제28조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1항 형사상 범죄와 관련하여 소추당한 사람은 누구나, 공개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밝혀질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 소추당한 사람은 그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시민권규약 제14조

제3항 형사상의 범죄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a) 본인이 알아듣는 말로 그가 받고 있는 혐의의 성질과 그 이유를 신속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통고받아야 한다.

b)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또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c)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

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형사정의를 위하여(interests of justice) 필요한 경우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비용부담 없이 법적 조력이 주어져야 한다.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를 위하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받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죄의 자백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

4) 거주 이전의 자유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

*국적 선택의 자유를 공정한다. 피난권을 공정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아무도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않는다.

3.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서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1항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피해서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

제1항 사람은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2항 아무도 함부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않는다.

5) 사생활의 권리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시민권 규약 제17조)

제1항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6) 양심과 표현의 자유

*우리 헌법에는 제19조에 양심의 자유 제20조에 종교의 자유 제21조에 언론과 출판의 자유 제22조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다. 양심, 사상, 종교, 표현,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좋을 듯

*사상의 자유를 명시한다.

*언론, 출판의 자유 대신 표현의 자유로 한다. 신매체의 등장을 고려한다.

*사전검열은 금지되나, 아동의 건강과 도덕적 감수성의 보호 위해서 대중매체에 한해서는 검열할 수 있음을 밝힌다.

*표현의 자유가 폭력에 달하는 때에는 범죄행위를 구성함을 명시한다. 즉 특정 인종, 국가, 종교, 성, 지역 등에 대한 증오의 고취와 폭력의 선동은 허용될 수 없다.

<양심, 사상, 종교와 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적 혹은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강론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아무도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를 해치게 될 강제를 받지 않는다.

3.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로 하여금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받게 할 자유는 그것이 자녀의 성숙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

4. 모든 이들은 양심, 사상, 종교 및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 권리는 정보와 모든 종류의 생각들을 국경등의 경계에 구애됨이 없이, 그리고 말이나 글로써 혹은 인쇄물 또는 예술의 형태로 혹은 개인이 선택하는 다른 방식으로써 찾고, 받고, 전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5. 위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은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 타인의 권리와 신망의 존중을 위하여

b. 국가안보, 공공질서 혹은 공중보건과 공중도덕을 위하여

6. 표현의 권리는 간접적인 방법 혹은 수단 예컨대, 신문, 잡지, 방송, 기타 정보를 전하는 매체에 대한 정부의 권한 남용 혹은 사인에 의한 통제, 기타 생각과 의견의 소통과 유통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들에 의하여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7.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매체는 오직 아동과 소년의 도덕적 보호를 위하여 규제할 목적에 의해서만 법률에 따라 사전검열 받을 수 있다.

8. 전쟁을 옹호하는 선전 그리고 국가, 인종 혹은 종교에 대한 증오의 고취 또는 인종,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특정의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증오의 고

취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

헌법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허가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시민권규약 제18조

제1항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적 혹은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강론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2항 아무도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를 해치게 될 강제를 받지 않는다.

제3항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로 하여금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받게 할 자유는 그것이 자녀의 성숙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4조 표현의 자유

-아메리카 인권규약 제13조

제1항 모든 이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정보와 모든 종류의 생각들을 국경의 경계에 구애됨이 없이, 그리고 말이나 글로써 혹은 인쇄물 또는 예술의 형태로 혹은 개인이 선택하는 다른 방식으로써 찾고, 받고, 전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항 위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은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 타인의 권리와 신망의 존중을 위하여

b. 국가안보, 공공질서 혹은 공중보건과 공중도덕을 위하여

제3항 표현의 권리는 간접적인 방법 혹은 수단 예컨대, 신문, 잡지, 방송, 기타 정보를

전하는 매체에 대한 정부의 권한 남용 혹은 사인에 의한 통제, 기타 생각과 의견의 소통과 유통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들에 의하여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제4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매체는 오직 아동과 소년의 도덕적 보호를 위하여 규제할 목적에 의해서만 법률에 따라 사전검열 받을 수 있다.

제5항 전쟁을 옹호하는 선전 그리고 국가, 인종 혹은 종교에 대한 증오의 고취 또는 인종,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특정의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증오의 고취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

7)집회, 결사의 권리

8)선거권, 공무담임권

9)재산권, 국가배상청구권

10)노동권

<기본적 노동권>

1.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일을 선택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노동권의 실현을 위하여 완전고용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직업지도와 훈련, 실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적정한 노동조건>

1. 노동조건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①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과 아동 그리고 산업체 위탁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 ②분인과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수
 3.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4. 승진에 관하여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에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2. 노동조합은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 그리고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조합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은 법률에 따라 파업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헌법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의 劳動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劳動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劳動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적으로 劳動의 機會를 부여 받는다.

*헌법 第33條

①勤勞者는 劳動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產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누리며, 실업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사람은 누구나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항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알맞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으로 보충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항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4조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노동시간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사회권규약 제6-8조

제6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와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ii)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

b)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c)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d)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8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여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제2항 이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항 이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유럽사회헌장

<노동권>

제1조 노동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제1항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고도의 안정된 고용수준의 달성을 유지를 그 중요 목표 및 책임의 하나로 수락할 것

제2항 자유롭게 들어간 직장에서 생계를 얻는 노동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제3항 모든 노동자를 위하여 무료의 직업소개제도를 확립하거나 유지할 것

제4항 적절한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직업복귀를 제공하거나 촉진할 것

제9조 직업지도에 관한 권리

직업지도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특성 및 그 직업상의 기회에 대한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직업이 선택과 진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원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이 원조는 취학아동을 포함한 소년과 성인이 함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직업훈련에 관한 권리

직업훈련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1.필요한 경우에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와 협의하여 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기술훈련 및 직업훈련을 제공 또는 촉진할 것 그리고 개인의 능력에만 근거하여 더욱 고도의 기술교육과 대학교육을 받는 편의를 제공할 것

2.다양한 고용에 있어서 견습제도 등 소년아동을 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를 제공하거나 촉진할 것.

3.필요한 경우에 다음을 제공하거나 촉진할 것

a)적절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년노동자를 위한 훈련의 편의

b)기술발전이나 고용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향의 결과로서 필요로 하는 성년노동자의

재훈련을 위한 특별한 편의

4.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에 의해 제공되는 편의의 충분한 이용을 장려할 것.
 - a) 수업료나 비용을 내리거나 없앨 것
 - b) 적절한 경우에는 재정적 원조를 줄 것
 - c) 노동시간 중에 사용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보충적 훈련에 드는 시간을 정규노동시간에 포함시킬 것
 - d) 적절한 감독에 의해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와 협의하여 견습제도 등 소년노동자를 위한 훈련기구의 능률 및 소년노동자 일반의 적절한 보호를 확보할 것

<적정노동조건권>

제2조 적정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 제1항 합리적인 1일, 1주 시간을 정할 것. 1주 노동시간은 생산성의 증대 등 관련요인에 허용되는 한 점진적으로 단축할 것.
- 제2항 유급의 공공휴일을 정할 것
- 제3항 최저 2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정할 것
- 제4항 특정의 위험 또는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정할 것
- 제5항 관계국 또는 관련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휴일로 인정되는 날과 가능한 한 합치되는 주휴를 확보할 것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제3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 관한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 제1항 안전위생규칙을 제정할 것
- 제2항 감독조치에 의해 전항의 규칙을 실시할 것
- 제3항 산업상의 안전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적절히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와 협의할 것

<공정보수권>

제4조 공정한 보수에 관한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 제1항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decent) 생활수준을 주는 보수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
- 제2항 시간외 노동에 대한 가산보수율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3항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갖는 남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
- 제4항 고용종료를 위한 합리적 예고기간에 관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
- 제5항 국내의 법령,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arbitration awards)으로 정한 조건 및 범위에 있어서만 임금공제를 허용할 것.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자유롭게 체결된 단체협약, 법정의 임금결정기구 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다른 조치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

<취약한 여러 범주의 노동자가 갖는 특별한 보호의 권리>

제7조 아동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 제1항 고용최저연령을 15세로 정할 것. 단 그 건강, 정신 또는 교육에 유해하지 않은 특정한 경노동에 고용되는 아동은 제외한다.

제2항 위험하거나 건강에 유해한 특정업무에 관하여 고용최저연령을 더 높게 규정하도록 정할 것

제3항 현재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은 교육의 완전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동에 고용되지 않도록 정할 것

제4항 16세 미만자의 노동시간은 발달의 필요, 특히 직업훈련의 필요에 응하여 제한되도록 정할 것

제5항 소년노동자 및 견습노동자의 공정한 임금 기타 적당한 수당에 관한 권리를 인정할 것

제6항 소년 노동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정규노동시간 중에 직업훈련으로 위하여 보낸 시간은 노동시간의 일부가 되는 것을 그취급하도록 정할 것

제7항 18세 미만의 노동자는 최소한 3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취득하는 권리를 정할 것

제8항 18세 미만자는 국내법령에 정해진 특정업무를 제외하고 야간노동에 고용되지 않도록 정할 것

제9항 국내법령에 특정된 업무에 고용된 18세 미만자는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정할 것

제10항 아동과 소년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위기, 특히 직접 간접으로 그 노동을 원인으로 하는 위험으로부터의 특별한 보호를 확보할 것

제8조 고용된 여성의 보호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제1항 유급휴가, 상당한 사회보장급부 또는 공공기금에 의한 급부에 의해 여성이 선전 산후에 최고한 합계 12주간의 휴가를 갖도록 정할 것

제2항 사용자가 여성에 대하여 그 출산휴기에 의한 휴업기간 중에 해고의 통고 또는 그 기간 중에 만기로 하는 해고의 예고를 하는 것을 위법으로 할 것

제3항 유아를 보육하는 어머니는 그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에 관한 권리를 갖도록 정할 것

제4항

a) 공업적 고용의 야간 노동에 있어서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규제할 것

b) 생내작업 및 적절한 경우에는 위험, 건강에 유해하거나 곤란하기 때문에 부적당한 기타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의 여성의 고용을 금지할 것

제15조 신체적 정신적 장애자의 직업훈련,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제1항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 도는 사적인 특별제도를 포함하는 훈련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제2항 특별한 고용 서비스,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을 위한 편의 및 사용자에게 장애자의 고용을 장려하는 조치와 같은 장애자의 고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11) 교육권

<교육의 이념>

모든 사람은 행복추구와 책임있는 인격의 형성을 위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가진다.

<교육의 기회균등>

1. 교육의 평등은 모든 사회적 평등의 기초이며, 국가는 그 절대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1. 아동과 소년기의 교육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실시한다.
2. 고등교육은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최소비용으로 적성에 맞는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의 내용>

1.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서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2.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서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연을 애호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계발하며, 공동생활을 위한 적절한 언어와 행위 규범을 익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적 지식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권리가 있다.
3. 학생들은 대학 이상의 교육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문적인 학문과 기술을 배울 권리가 있다.
4. 대학은 평준화되어야 하며, 사회적 지위의 결정은 오로지 일에 맞는 공적인 평가절차에 따른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1.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 대학교는 창조적인 기술의 개발, 체제 개선 그리고 미래질서의 향도의 요람으로 키워져야 한다. 각 대학교에는 인권센터를 두어 각 지역의 인권위원회와 협조하여 인권옹호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헌법 第31條

- ① 모든 국민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教育을 받을 権利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 ③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
- ④教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 ⑥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운영, 教育財政 및 教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이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

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느 것에 동의한다.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a)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 b)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c)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d)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e)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 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1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기아로부터의 해방>

1. 모든 이들은 기아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국가는 환경친화적이면서 과학적인 영농 기술과 적절한 식량정책으로 항상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 점심은 학교급식으로 시행한다. 학교급식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소년들의 몫은 같은 학교 혹은 같은 지역 다른 학부형들이 고루 분담한다.
3. 학교 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각 종교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식사를 제공하는 종교단체는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

<주거의 보장>

1. 모든 이들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임대주택 등 적절한 주택 정책으로 모든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국가는 집이 없는 이들을 위해 간이 주거시설들을 운영한다. 거기에는 최소한 상하수도와 전기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

<건강과 의료의 보장>

1. 모든 이들은 최소한의 건강과 의료혜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과 충분한 사회체육과 휴게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의료시설과 합리적인 의료보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아동과 소년기의 정상적인 발육과 성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체육과 보건에 가장 역점을 둔다. 학생들은 학교과정을 통하여 건강과 체력이 증진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예방의학에 힘써야 한다. 개인들은 매일 적절한 시간대에 대중매체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 대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국가는 기본적인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6. 의료보험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보험료 납부의

크기가 비례관계에 있도록 한다.

*헌법 第34條

- ①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 ② 國家는 社會保障 · 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 ③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國家는 老人과 青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 ⑤ 身體障礙者 및 疾病 · 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 ⑥ 國家는 災害를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第35條

- ①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 ③ 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으로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과학, 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b) 식량 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a)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유럽사회헌장 제13조

사회부조 및 의료부조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1. 적당한 자력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의 노력이나 기타 수단, 특히 사회보장제도상의급

부에 의해서도 그러한 자력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적절한 부조를 부여받고, 병든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확보할 것

2. 그러한 부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유로 그 정치적 또는 사회적 권리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확보할 것

3.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공적 또는 사적 서비스에 의해 개인적 또는 가족적 결핍을 예방,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개인적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할 것

13) 혼인과 가족의 보호

1. 혼인과 가정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조건이자 단위로서 국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당사자들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성년에 달한 이들은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를 권리로 가진다. 양 배우자는 혼인의 지속과 해소에서 동등한 권리로 가진다.

* 헌법 第36條

- ① 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 ② 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1항 성년에 달한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를 권리로 가진다. 양 배우자는 혼인의 지속과 해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항 혼인은 장래의 배우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제3항 가정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공동체의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시민권규약 제23조

제1항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로 가진다.

제2항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제3항 혼인은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제4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유럽사회헌장

제16조 사회의 기초적 단위인 가족의 충분한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사회적, 경제적 급부, 세무상의 배려, 가족용 주거의 공급, 신혼자를 위한 급부, 기타 적절한 조치에 의해 가족생활의 경제적 법적 사회적 보호를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제17조 모자의 사회적 경제적 보호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적절한 제도나 서비스의 확립 또는 유지를 포함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14)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1. 혼인을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2. 자녀의 성은 부모의 협의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한다. 성은 자녀의 성숙된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공무원과 정치인의 충원에서 여성을 위한 가산점제 혹은 할당제는 한시적으로 요청된다.

4. 직업의 선택, 보수, 배치, 교육, 승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5. 임신과 출산의 권리가 보장받는다.

①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출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전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최소한 12주의 유급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어려운 때를 제외하고는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임산부 여성을 해고하지 못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자가 보다 경이한 근로로 전환배치를 요청하는 경우 그것을 수락하여야 한다.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

1. 모든 사람은 아동도 인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아동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과 인간들 상호간 공동생활의 어려움과 필요성 그리고 그 즐거움에 대하여 배울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평화와 인권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뜻뜻한 인격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성별, 종교, 적서의 구별, 경제적 능력 등 부모의 사회적 조건 기타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도 차별받지 않는다.

5. 아동은 생명에 위협하거나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한 노동에 고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행위는 범죄행위로 처벌된다.

6. 아동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성적 학대와 착취,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한 행위는 범죄행위로 처벌된다.

7. 아동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국가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노인의 권리>

1.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2.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3.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에게는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4. 모든 공공시설의 이용과 공공장소에의 접근에서 노인들은 우선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

1.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2.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그 연령 · 능력 ·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및 특수교육시설의 설치를 도모하는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 ·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지원 또는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불편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의 실시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및 직역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시민권규약 제24조

제1항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가진다.

제2항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제3항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가진다.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조약

제2조 제1항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항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

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아동의 최상의 이익

제1항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 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느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2항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 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부모의 지도와 아동의 능력 발달

아동이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부모로부터의 분리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 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본조 제2항에 따른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 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 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 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여하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하여)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여하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여타 가족 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 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의 의견

제1항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하다.

제2항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항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항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혹은 공중도덕의 보호

제17조 대중매체, 적합한 정보에 대한 접근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a)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b) 다양한 문화적,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 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 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c) 아동 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d) 대중 매체로 하여금 소수 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고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e)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부모의 책임

제1항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제19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제1항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족환경 상실 아동에 대한 특별보호

제1항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 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장애 아동

제1항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제30조 소수자 또는 원주민 아동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휴식, 여가 문화생활

제1항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제2항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3조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성적 착취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아동을 여하한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b)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c)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유럽사회현장 제13조

사회부조 및 의료부조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1. 적당한 자력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의 노력이나 기타 수단, 특히 사회보장제도상의 급부에 의해서도 그러한 자력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적절한 부조를 부여받고, 병든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확보할 것

2. 그러한 부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유로 그 정치적 또는 사회적 권리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확보할 것

3.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공적 또는 사적 서비스에 의해 개인적 도는 가족적 결핍을 예방,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개인적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할 것

제5항 아동과 소년의 권리를 위해 국가는 다음을 보장한다.

1. 고용최저연령을 15세로 한다. 단 그 건강, 정신 또는 교육에 유해하지 않은 특정한 경노동에 고용되는 아동은 제외한다.

2. 현재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은 교육의 완전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동에 고용되어서는 안된다.

3. 16세 미만자의 노동시간은 발달의 필요, 특히 직업훈련의 필요에 응하여 제한되도록 정할 것

4. 소년노동자 및 견습노동자를 이유로 공정한 임금 기타 적당한 수당에 관한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5. 18세 미만의 노동자는 최소한 3주간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6. 18세 미만자는 국내법령에 정해진 특정업무를 제외하고 야간노동에 고용되지 않는다.

7. 국내법령에 특정된 업무에 고용된 18세 미만자는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8. 소년 노동자는 신체적 정신적 위기, 특히 직접 간접으로 그 노동을 원인으로 하는 위험으로부터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6항 여성의 노동조건보호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1. 유급휴가, 상당한 사회보장급부 또는 공공기금에 의한 급부에 의해 여성이 선전 산후에 최고한 합계 12주간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자가 여성에 대하여 그 출산휴가에 의한 휴업기간 중에 해고의 통고 또는 그 기간 중에 만기로 하는 해고의 예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3. 유아를 보육하는 어머니는 그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4. 공업적 고용의 야간 노동에 있어서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규제할 것

제7항 신체적 정신적 장애자의 직업훈련,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제1항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 도는 사적인 특별제도를 포함하는 훈련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제2항 특별한 고용 서비스,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을 위한 편의 및 사용자에게 장애자의 고용을 장려하는 조치와 같은 장애자의 고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역사적 원천

영국 청교도 혁명에서의 수평파 : 인민협정

명예혁명 :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혁명 : 버어지니아 권리선언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 1798년 선언, 1793년 선언(로베스피에르 선언), 바뵈프의 평민

계급의 선언, 1848년 헌법, 파리 코뮌 헌법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영국 차아티스트 운동

러시아 혁명의 근로하고 착취받는 인민의 권리선언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현대 인권의 국제적 준거

1) 일반적 인권규범

1941년 1월 26일 루스벨트 대통령의 4개의 자유의 선언

1941년 8월 14일에 루즈벨트와 처칠이 작성한 대서양 협정

1942년 1월 1일 연합국 선언

1945년 국제연합헌장

1948년 "인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아메리카선언"

1948.12.10 세계인권선언: 유엔 제3회 총회에서 채택

1950 유럽인권조약 : 로마조약

1961 유럽사회헌장

1966년 2개의 규약 : 사회권 규약과 시민권 규약 제정 시민권 규약에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위한 선택의정서가 첨부되었다.

1969 아메리카인권조약 : 산호세

1971 아랍인권헌장 제1초안

1975 5월 아랍인권규약 초안

1981 아프리카 인권헌장

1998 광주의 아시아 인권선언

2) 특수적 인권규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 1989, 1991.7.11 발효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1966, 1969.1.4. 발효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제14조에 관한 선언, 1982.12.3. 발효

아파르트헤이드 범죄의 금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1973, 1976.7.18. 발효

동일노동에 대한 남녀의 동일보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1951, 1953.5.23. 발효

교육차별 금지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1960, 1962.5.22. 발효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958, 1960.6.15. 발효

남녀 노동자의 동등기회와 등등대우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981, 1983.8.11. 발효

학살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1948, 1951.11.12. 발효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대한 법적 제한의 적용불가능성에 관한 협약, 1968, 1970.11.11. 발효

고문 및 잔학한 비인간적, 모욕적 대우 또는 처벌금지 협약, 1984, 1987.6.26. 발효

인신매매와 타인의 매춘에 대한 착취등의 금지 협약, 1950, 1951.7.25. 발효

수정(정보의 수정)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52, 1962.8.24. 발효

결사의 자유와 조직할 권리의 보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948, 1950.4.4. 발효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53, 1954.7.7. 발효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 1981.9.3. 발효

아동의 권리 협약, 1989, 1990.9.2. 발효 등등

3) 유네스코와 유엔에서 채택한 국제선언

죄수의 대우를 위한 표준최소규칙, 1955

정신박약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 1971

불구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 1975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관한 선언, 1978

종교와 신념에 바탕한 불관용 및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 1981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의 권리보호의 보장, 1984 등등

4) 개별국가의 인권법 혹은 인권위원회법

인권법의 형식보다 인권위원회법의 형식이 압도적

인권법의 형식을 취하는 국가 :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인권법이라고 하여도, 그 주된 내용은 인권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임
다만 차별금지의 근거들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